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5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20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18.
- (3) 회 부 일 : 2025. 1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되어,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는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명확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의료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하여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인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한 소속 회원에 한정하여 자격정지 처분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제66조의2를 삭제하는 대신, 의료인단체가 품위를 훼손한 회원뿐만 아니라 ‘정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중앙회로 하여금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 ⑥ (생략)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6조의3에 따라 회원에 대한 징계-----.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6조의3(중앙회 회원에 대한 징계)</u> <u>① 각 중앙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u> <u>1.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u> <u>2. 중앙회의 정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u> <u>②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징계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며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에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반영하여 제6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내용을 각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회원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중앙회의 정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규제와 달리, 규제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법령상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함.¹⁾

자율규제의 효용으로 효율성, 순응성, 적응성 및 전문성을 꼽을 수 있음. 자율규제는 피규제집단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므로 정부 입장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자체 집단에 의한 규제이므로 구성원들의 순응 확보에 용이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규칙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쉽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임.²⁾

-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서 전문가단체의 징계 및 징계요구권 등의 자율규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두고,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가 있는 변호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³⁾

1) 현두륜변호사,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양승조의원실 주최) 발제문, 2010.8.

2)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11.

3)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도 업무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의뢰인 등이 수임(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지할 경우에도 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하도록 하여 변호사에 대한 1차 징계는 모두 변호사 협회징계위원회가 하도록 일원화하고 있음.⁴⁾

- 이에 반하여 변리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관 부처에 두고, 소관 부처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가단체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⁵⁾

제96조(법무부장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장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4) 「변호사법」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변리사법」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2. 변리사

3. 대학교수

4.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징계) 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는 해당 징계위원회 구성 시 위원 1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세 단체 모두 소관부처에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⁶⁾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세무사법」 **제17조(징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6) 「변리사법」 **제17조(징계)**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제48조(징계)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음.⁷⁾ 세무사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제명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음. 미등록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제명은 곧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함.⁸⁾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제17조(징계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7) 「세무사법」 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8)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리나라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현황 >

구 분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징계 권한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법무부장계위원회: 변협징계위 결정에 대한 이의권 심의)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 소속 징계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 징계위원회 의결)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 소속 징계위원회 의결)
징계위원회 구성시 협회관여	변협징계위: 협회선출 3명, 협회장추천 1명 /법무부장계위: 협회장 추천 1명	-	협회장지명 1명	협회장지명 1명
협회의 징계요구권 및 제명권	-	징계요구권 있음	징계요구권 있음	징계요구권 있음

□ 의료인 역시 전문직종으로서, 현행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의료인단체의 자격정지 처분요구권을 명시한 제66조의2⁹⁾를 신설(2011년)한 바 있음.

-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도 의사 윤리를 위배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권리 정지 등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달리 그 징계가 법적·행정적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예와 관련된 성격이 강해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9) 「의료법」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주: 신설 당시 ‘의료인’으로 통칭하였으나, 2024.9.20.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개정)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설된 제66조의2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인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음.

□ 그러나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인단체는 제한적인 처분요구권만 있을 뿐 자율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자정 기능이 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2022년 서정숙의원실 주최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의 발제자는 의료행위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침습성 등의 특성이 있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의료인들은 고도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정 노력 또한 강하게 요구되므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함.¹⁰⁾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2015년 12월)¹¹⁾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16년 3월)한 바 있음. 이 방안에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10) 김준래변호사,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서정숙의원실 주최) 발제문, 2022.10.

11)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위생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건으로, 해당 의원은 수액주사 위주의 진료를 하며 주사 처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점이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해당 의사는 실행을 선고받았으며, 원장 부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밝혀지면서 의료기관의 주사사용 관리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를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의 시범 도입 계획이 포함되었음.¹²⁾

- 의사의 경우 2016년 12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시작되어 2019년 5월 8개 시·도로 확대되었음. 시범사업은 광역시·도의사회에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는 구조임.¹³⁾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한 의사협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¹⁴⁾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20년 및 2024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백서’를 발간하면서 운영성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전문가평가단 운영을 통해 회원 간 문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였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문가평가제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방안」 발표’, 2016.3.8.

보건복지부등 보도자료,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2016.9.22.

13) 보건복지부등 보도참고자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2019.5.10.

14) 보건복지부등 보도참고자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2019.5.10.

보건복지부등 보도참고자료,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자율적 면허 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작한다’, 2019.7.5.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¹⁵⁾

-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4년 9개월간 서울시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총 72건 민원을 처리하였는데¹⁶⁾, 주요 민원은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징계가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연계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방식에 관하여 변호사협회 방식(자율 징계권)과 변리사회/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방식(징계요청권) 중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2011년 제66조의2¹⁷⁾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원안은 의료인단체에 처분요청권을 부여하면서 처분요청의 사유로 “1.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때, 2. 제28조에 따른 정관 준수 의무를 하지 않은 때, 3. 제3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때, 4. 의료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때”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처분의 종류도 “1. 1년이하의 자격정지, 2. 제9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2가지를

15)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2020.5.

서울특별시의사회 보도자료, ‘서울시醫,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2024.1.22.

16) 처리결과: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주의 35건, 혐의없음 17건, 조사 중단 12건

*여기서의 행정처분은 의협 중앙윤리위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17) 「의료법」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주: 신설 당시 ‘의료인’으로 통칭하였으나, 2024.9.20.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개정)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 처분”에 한정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축소되었음.

-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대한변호사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회원의 지도·감독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고 중앙회에 대한 정부부처의 감독권을 법률로 명시¹⁸⁾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중앙회는 정관에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라고 명시¹⁹⁾되어 있는 등 타 단체들과는 설립취지 및 성격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의료인의 의무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 등은 의료법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은 국가가 법령을 근거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중앙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다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인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요구권만큼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음.

18) 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감독) ①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9) 정관 제2조(목적) 협회는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양양, 의학·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하도록 종용하는 등 사업자단체로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에게 징계처분권 등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발하고 사업자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음.

□ 또한, 「변호사법」이 변호사협회에 변호사에 대한 1차 징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는 직무의 성격상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검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⁰⁾ 이러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국가기관에 부여할 경우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위협이 될 수 있음.²¹⁾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항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론하는 지위에 있는 변호사와 의료인을 포함한 다른 전문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 관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협회장 직선제 변경에 따라 징계권이 정치적으로 회원들을 규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징계권의 법무부 환원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²²⁾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취지에서, 변호사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기 위하여 창설된 제도라고 밝힘.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변호사단체의 임의화·복수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의화·복수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변호사 등록·징계권이 국가로 환수될 경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원·검찰·변호사단체 3자의 견제·균형이 무너져 국민의 인권 옹호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21) 오종근, ‘변호사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통권 308·30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2.4·5.

22)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정독, 2022.8.

박동일, “[기고]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변형 징계권, 이대로 괜찮은가”, 로리더, 2025.7.7.

-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제66조의2에 의하여 의료인단체도 최소한의 처분요청권은 부여받았으므로, 필요시 다른 전문가단체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징계요청권으로 변경하면서 징계 사유와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참고로, 제66조의2 신설(2012.4.28.시행) 이후 현재까지 각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소속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총 14건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중 10건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제66조의2 시행 이후 각 중앙회의 처분요청 현황 >

구분	요청년도	처분년도	처분종류	사유	비고
대한 의사 협회	2015	2018	면허취소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징역 1년
	2016	2018	자격정지 1개월	비도덕적 진료행위	징역 2년6월
	2017	2018	면허취소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징역 35년
	2017	2019	자격정지 20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선고유예
	2018	2019	면허취소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징역 1년
	2018	2020	면허취소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징역 2년 (집유 3년, 벌금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2020	2021	종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조사결과 반영
대한 치과 의사 협회	2016	2019	종결	행위시 이후 개정법령에 따른 위반사항(불소급)	
	2016	2023	종결	사실관계 불명확	
대한 한의사 협회	2015	2015	자격정지 1개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2016	2016	종결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으로 조정 성립	법원 조정
	2016	2017	자격정지 1.5개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2019	2023	면허취소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징역 3년 (집유 5년, 벌금 10.74억원)
	2021	2021	자격정지 1개월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징계의 종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론적으로는 징계제도는 특정 조직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이고,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은 국가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구분되며, 조직 내부질서에 대한 규율인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해당 조직의 정관 또는 회칙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징계의 종류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이 포함될 경우, 행정청의 행정처분과 중복될 수 있고, 전문가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법률에 의한 관리도 필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전문가단체의 징계를 규정한 입법례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문가단체의 징계 규정 >

구 분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징계사유	- 영구제명 사유: 1. 직무관련 금고 이상(2회이상) 2. 정직이상 처분(2회이상)후 징계사유 재발생 - 기타 징계 사유: 1. 변호사법 위반 2. 회칙 위반 3. 품위 손상	1. 변리사법 위반 2. 법에 따른 명령 위반	1. 공인회계사법 위반 2. 법에 따른 명령 위반 3.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 착오 또는 누락 4. 회칙 위반 5. 품위 손상	1. 세무사법 위반 2. 회칙 위반
징계종류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 정직 4.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 견책	1. 등록취소 2. 2년 이내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견책	1. 등록 취소 2. 2년 이하 직무정지 3. 1년 이하 일부 직무정지 4. 견책	1. 등록취소 2. 2년 이내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 과태료 4. 견책

□ 둘째, 개정안 제66조의3은 제1항에서 각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서,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중앙회의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 간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앙회의 징계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징계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고, 중앙회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상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되어 있는데, 만약 징계의 종류에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등이 포함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의 관계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안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징계는 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각 중앙회가 내리는 것이므로, 문구를 “각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 결과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정안 제66조의3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반영하여 “제6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8조는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하는 조항이므로, 행정처분의 근거조항인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징계의 종류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의료기관 대상 행정처분의 근거조항인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면허관리 제도 및 행정처분과의 관계, 타 전문직역의 징계권 행사 여부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국가가 의료인 면허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면허등록 권한이 없는 의료인 단체에게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상 적절치 않음.
- 타 전문직역(변리사·세무사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징계권은 국가가 행사하며 협회는 징계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으로도 의료인 단체는 회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가능하므로, 징계 결과를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징계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함.

2) 대한의사협회 (찬성)

□ 현행 의료법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그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직접 연계되기 어려운 실정임.

- 변호사에 대한 징계제도의 경우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협회의 전문적·윤리적 판단을 국가가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의료인단체는 현재 조사권도 갖추지 못함.
- 국제적으로도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장 잘 아는 동료 전문가들의 평가에 기반하여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제 모델로 정착되는 추세임.
- 일부에서는 자율규제 방식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나, 이는 실제 운영 사례와는 거리가 있음. 각 지역 단체가 운영 중인 의료광고심의 위원회의 경우, 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행정기준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설정·적용되고 있음.
- 다만, 본 개정안은 자율규제가 완전히 정착된 최종 단계라기보다는 의료계 자율규제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향후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외부 통제 장치의 적절한 도입 등을 통하여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함.

3)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정수용)

- 개정안은 중앙회에 직접적인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반영 권고에 그치는 등 그 한계가 명확하므로, 보건복지부가 징계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한간호협회 (조건부 수용)

- ☐ 의료인 단체별로 징계 수위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율징계 결과와 행정처분으로 자동 연계가 아닌 제한적 참고적 반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 또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 및 투명한 심의 절차와 이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가 병행되어야 함.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반대)

- ☐ 국민과 환자 다수의 시각에서 의료인 단체에 독립적인 면허 관리 권한과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음.

문 의 처
02)6788-5494